

'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(안) 심사 보고서

1998. 4. 24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4월 16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4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2차 내무위원회(1998.4.24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이유

- '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6회('98.3.6) 임시회에서 변경 확정한 바 있으나

-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〈재산의 취득〉

-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
 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66(도립전문대학 인접부지)
 - 규 모 : 2,645.0m²(800평)
 - 시 기 : '98 상반기
 - 취득가액 : 80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: 오건영)

충청북도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대학이 '98년도에 개교됨에 따라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·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

위하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의 대학인접 부지 800평(2,645.0m²)을 매입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참석인원 3명, 찬성 2명)

7. 소수 의견 요지 : 대학생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의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오나 기숙사 건립에 따른 규모 및 운영, 재원확보 등 전반적인 세부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